

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11. 1. 12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10. 1. 13.
- 상정일 : 2010. 1. 19.(제1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경제과장 함영득)

가. 제안이유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22일 근거법률 개정으로 시. 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22일 위임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개정으로 시. 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상학)

- 본 조례 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22일 위임법률 개정으로 시. 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변경되고 시행령 제33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-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
- 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관련법률 제29조 제2항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에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.로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은 제천시장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없음

나. 답변요지

- 없음

5. 소수 의견

“ 없음 ”

6. 토론 요지

“ 없음 ”

7. 심사 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